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
----------	----

제안연월일 : 2022년 7월 1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에 발맞춰 1개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 사항 등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임위원회 수를 10개에서 11개로 확대함(안 제32조).
- 나.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안전건설위원회로 함(안 제33조제1항제7호).
- 다. 도시주택위원회 소관을 주택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미래청년기획단, 인권담당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함(안 제33조제1항제8호).
- 라.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을 여성가족정책실, 도시계획국, 스마트도시정책관,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서울디지털재단, 여성가족재단으로 함(안 제33조제1항제9호).
- 마.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34조제2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안전건설위원회
8. 도시주택위원회
9. 도시계획위원회

제3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안전건설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자치위원회
 - 가. 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민생사법경찰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평생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시민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야.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차.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사항
- 카.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 타.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 파.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3. 기획경제위원회

-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경제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남북협력추진단에 관한 사항
- 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관한 사항
- 마. 서울연구원에 관한 사항
- 바. 서울산업진흥원에 관한 사항
- 사. 서울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위원회

- 가. 복지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시민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 라.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마.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

바.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한 사항

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

8. 도시주택위원회

가. 주택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정무부시장실 소관 중 인권담당관에 속하는 사항

마.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한 사항

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위원회

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균형발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공공개발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

사.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는 9명 이상으로 한다.</p> <p>1. ~ 6. (생략)</p> <p>7. <u>도시안전건설위원회</u></p> <p>8. <u>도시계획관리위원회</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9. · 10. (생략)</p> <p>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행정자치위원회</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삭제 <2021. 9. 15.></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민생사법경찰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안전건설위원회</u></p> <p>8. <u>도시주택위원회</u></p> <p>9. <u>도시계획위원회</u></p> <p>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p> <p>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행정자치위원회</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민생사법경찰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평생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바.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평생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에 속하는 사항

카.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타.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파.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하.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에 속하
는 사항

거. 정무부시장실 소관 중 인권담
당관에 속하는 사항

너.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

더.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사항

리. 시민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
항

3. 기획경제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에 속하는 사항

라. 남북협력추진단에 관한 사항

바. 시민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에 속하는 사항

차.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사항

카.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타.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파.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3. 기획경제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남북협력추진단에 관한 사항

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
관한 사항

마. 농수산물식품공사에 관한 사항
바. 서울연구원에 관한 사항
사. 서울산업진흥원에 관한 사항
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자. 서울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차. 삭제 <2018. 12. 31.>
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에 속하는 사항

4. · 5. (생략)

6. 보건복지위원회

가. 복지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시민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라.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마.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바.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사.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

아.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한 사항
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
비스원에 관한 사항

마. 서울연구원에 관한 사항
바. 서울산업진흥원에 관한 사항
사. 서울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4. · 5. (현행과 같음)

6. 보건복지위원회

가. 복지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시민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라.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마.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
바.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한 사항
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
비스원에 관한 사항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 ~ 사. (생략)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가. 주택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균형발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 <2021. 9. 15.>

마. 삭제 <2021. 9. 15.>

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한 사항

사. 공공개발기획단 소관에 속하
는 사항

<신 설>

7. 안전건설위원회

가. ~ 사. (현행과 같음)

8. 도시주택위원회

가. 주택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라. 정무부시장실 소관 중 인권담
당관에 속하는 사항

마.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에 속하는 사항

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한 사항

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위원회

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나.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에 속
하는 사항

라. 균형발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공공개발기획단 소관에 속하

<p>9. · 10. (생략)</p> <p>② (생략)</p> <p>제34조(상임위원회의 의원) ① (생략)</p> <p>② <u>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u></p> <p>③ · ④ (생략)</p>	<p><u>는 사항</u></p> <p><u>바.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u></p> <p><u>사.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u></p> <p>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4조(상임위원회의 의원) ①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